

# 연구윤리 규정

## 전 문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은 불교학, 불교사, 불교문화 연구의 저변을 넓히고 한국불교학의 이론적, 실천적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단체이다. 특히 한국 근현대불교사에서 선학원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원은 학술회의(연 1회), 학술상(연 1회), 월례발표회(연 4회) 등 각종 학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 2회에 걸쳐 논문집(『禪文化研究』)을 발간하고 있다. 이들 학술사업의 전 과정에서 본 연구원의 구성원들은 발표자(학술상 응모자 내지 논문 투고자 포함, 이하 같음)들의 연구 성과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심사·편집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관함으로써 연구 윤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상 본 연구원의 연구윤리 원칙은 발표자, 심사자, 편집자 등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좀 더 진실하고 엄정한 연구, 심사·편집 과정을 견인해 왔을 것으로 자인한다.

이에 별도로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본 연구원의 구성원들과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의 원칙을 규범적으로 인식하여 본 연구원의 학술 사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원의 모든 학술 사업은 연 2회 발간하는 논문집(『禪文化研究』)으로 수렴, 구체화된다. 또한 논문집 발간과 관련하여 일반 연구자들의 참여가 활발하므로 연구윤리 규정 역시 이 부분에서 좀 더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논문 게재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으로 구별하여 각각에 필요한 윤리 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원이 특별히 제정하여 공모, 심사, 시상하는 ‘선리연구원 학술상’ 관련 내용을 부기하고자 한다.

## 제1장 연구윤리 규정

### 제1절 발표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제1조 표절

본 연구원의 논문집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제시하면 안 된다. 타인의 연구 성과를 참조할 경우에는 본 연구원이 정한 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각주로 밝혀야 한다.

#### 제2조 중복 게재

본 연구원의 논문집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연구원 편집위원회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비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또한 참고한 문헌의 경우 전체 페이지를 포함해 완벽한 서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 제4조 논문의 수정

본 연구원의 논문집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2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제1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규정에 맞추어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심사 규정에 명기되어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별지 활용 가)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제4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한 사실, 논문의 내용 등 심사 대상 논문과 관련된 일체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본 연구원에서는 심사 의뢰 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심사 서약서'를 모든 심사위원들로부터 받고 있다. 또한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3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 개인의 인격과 연구자로서의 독립성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 제2조

편집위원은 저자의 나이, 성별, 직위, 소속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논문을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투고 논문 1편당 6명의 관련 전공자를 선정하여 이들의 대표 연구업적 목록과 소속, 직위를 명시한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해당 논문 심사에 적실하다고 판단되는 3명의 심사위원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특히,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 내지 악연이 있는 이에게 심사를 의뢰하지 않도록 해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

편집위원은 1편당 3인의 심사결과서를 취합한 후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1) 심사 결과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결정한다.
- 2) 심사 결과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수정 권고 사항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이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그 논문의 게재를 결정한다.
- 3) 심사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 불가 사유를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 4) 심사 결과 '재심 회부'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재심 사유를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수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재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가'와 '부'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심사 결과에 따른 관리는 위의 1), 2), 3)항에 절차를 따른다.
- 5) 심사 결과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재심 회부', '게재 불가'로 판정 소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3인 심사위원의 총점을 평균점으로 환산한 결과에 따라 80점 이상이면 '게재 가', '수정후 게재', 6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재심 회부', 60점 미만이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 판정 결과에 따른 관리는 위의 1), 2), 3), 4)항에 따른다.

### 제5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에게 투고자의 성명과 직위, 소속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게재가 결정된 이후라도 이상의 심사 과정을 누구에게도 공개하면 안 되고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의 성명, 직위, 소속 등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제4절 선리연구원 학술상 관련 윤리 규정

### 제1조 공모

한국연구재단 및 주요 불교관련 연구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모 주제, 지원 자격, 선정 인원과 상금, 제출 서류 및 기한, 선정 일자 및 통보 방식, 주의 사항 등을 첨부하여 공모한다.(공모 기간은 본 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제출 기한 전 30~50일 정도로 한다)

## 제2조 접수

제출 기한 내에 응모된 서류를 수합해 일련 번호를 매겨 접수상황표를 작성한다. 이후 수상자가 선정되기까지 모든 관련 서류에서 응모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한다.

## 제3조 심사

관련 전공자 중 우수한 연구 업적을 발표한 연구자를 중심으로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연구원이 추천하고 원장이 선정한다. 해당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매긴 심사결과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한다. 기타 심사위원 윤리 규정은 위의, '제2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에 준한다.

## 제4조 집계 및 선정, 통보

1편당 3인의 심사결과서를 수합해 점수를 합산한 후 고득점을 한 응모자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한 후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 수상자를 발표하고 개인별로 통보한다.

## 제2장 윤리 규정 시행 지침

### 제1조 윤리 규정 서약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의 신입 연구원 및 신입 회원은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연구원 및 회원은 윤리 규정의 발효 시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조 윤리 규정 위반 보고

연구원 및 회원은 다른 연구원 및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본 연구원의 연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제3조 연구위원회 구성

연구위원회는 연구원 및 회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 제4조 연구위원회의 권한

연구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5조 연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원 및 회원은 연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원 및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위원은 해당 연구원 및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원장은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 제9조 윤리 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연구원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연구원 및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수정된 규정을 준수해

야 한다.

### 제3장 부칙

#### 제1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규정의 기준을 준수하고 연구윤리 개정 시 이를 참조 반영한다.

#### 제2조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확보지침 개정안(2015년 11월 3일 개정)을 반영한다.